

- 구민이 참여하는 열린행정소통의 도시 • 사람이 중심에 서있는 교육복지도시 •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창조도시
-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자족도시 • 삶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예술도시 • 자연친화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건강도시



연수구보

■ 구정 방향 ■

함께 가꿔요!

행복한 연수!

발행·편집인:연수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제로 115호 (우)406-120 ☎ 810-7072 / FAX 810-707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부록 제713호 2012. 10. 4.(목)

【훈 령】

- 인천광역시연수구훈령 제238호(인천광역시연수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1

【예 규】

- 인천광역시연수구예규 제66호(인천광역시연수구 성화통예방 및 성매매방지 지침 일부개정지침) 6

【고 시】

- 인천광역시연수구고시 제2012-78호(2012년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8

회							
람							

인천광역시연수구훈령(발령)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 제정이유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제5항 및 제6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원, 관계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결과를 기초로 공단의 설립여부를 심의하여야 하는 바, 이에 따라 설립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은 정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함 (제3조) ○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제5조) ○ 위원회는 타당성 검토 기관의 의견과 담당공무원의 의견 청취 및 질의·응답을 할 수 있으며 설립심의 심사표에 심의함 (제7조)

인천광역시연수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2. 10. 4.

인천광역시연수구훈령 제238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인천광역시연수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의한 전문기관의 타당성검토 결과에 따른 인천광역시연수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설립의 타당성 심사
2. 공단 설립의 타당성 심사 결과를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

제3조(구성 및 임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연수구의회 의원
2. 관계 전문가

3. 연수구(이하 “구” 라 한다) 소속 공무원

② 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은 정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③ 민간위원은 전문성, 공정성, 협조성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설립심의를 완료할 때까지 존속하고,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존속기간과 같다.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또는 해외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하고 위원들이 골고루 발언하고 동등한 자격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특정 위원이 발언을 독점하거나 분위기를 유도하는 발언 또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적절한 조절과 통제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정회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심의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다.

1. 인천광역시 협의 결과

2. 타당성 검토 결과

3. 주민공청회 등 의견수렴 결과

4.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7조(심의절차 및 방법) ① 위원회의 위원은 타당성 검토 기관의 의견과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타당성 검토 기관과 담당 공무원에게 질의·

응답을 할 수 있다.

② 심사는 별표에 따른 설립심의 심사표에 한다.

③ 위원은 비공개 심의를 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비공개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은 이 요구에 응해야 한다.

제8조(회의록) ① 위원회 회의내용은 담당공무원이 배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한다.

② 기록된 회의록은 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를 함으로써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개발계획과 관련된 사전 정보가 포함된 내용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연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공단 설립등기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별표】

설립심의 심사표(제7조제2항 관련)

구분	판단 요소	판단지표	평 가					점수 (/만점)
			수	우	미	양	가	
사업 적정성 (48)	사업의 적정성 (16)	지방공기업으로서 운영되는 것이 적정한 사업인가 ?	8	6	4	2	0	/8
		지역여건 및 정부시책과 부합하는 사업인가 ?	8	6	4	2	0	/8
	사업의 타당성 (16)	사업목표는 구체적으로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8	6	4	2	0	/8
		사업대안·분석 및 의사결정 과정이 타당하게 이루어졌는가 ?	8	6	4	2	0	/8
	사업의 충실성 (16)	사업수행을 위한 여론수렴 및 관련절차는 충분히 이행되었는가?	8	6	4	2	0	/8
		사업의 장기적 발전가능성은 있는가 ?	8	6	4	2	0	/8
사업 경제성 (32)	사업의 수익성 (16)	사업별 수지분석은 적정한가 ?	8	6	4	2	0	/8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가 ?	8	6	4	2	0	/8
	사업구조 적절성 (16)	사업구조 및 조직은 적정한가 ?	8	6	4	2	0	/8
		인력산정은 적정한가 ?	8	6	4	2	0	/8
사업 공공성 (20)	복리증진 (10)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	10	8	6	4	2	/10
	과급효과 (10)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개발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인가 ?	10	8	6	4	2	/10
심사결과 종합		찬반 여부	☐ 찬 성 ☐ 반 대					
		결정 사유						

심의위원 : 성명

(서명)

인천광역시연수규예규(발령)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성화릉예방 및 성매매 방지 지침 일부개정 지침	☐ 개정 이유 ○ 2011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해당부서의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2011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본 지침 내용 중 “자치행정과장” 을 “총무과장” 으로(제5조 및 제8조), “자치행정과” 를 “총무과” 로 변경함(제6조)

인천광역시연수구 성희롱예방 및 성매매방지 지침 일부개정지침을 이에 발령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2. 10. 4.

인천광역시연수구 예규 제66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성희롱예방 및 성매매방지 지침 일부개정지침

인천광역시연수구 성희롱예방 및 성매매방지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를 “총무과”로 한다.

제8조제4항 및 제11조제3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2년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9월 28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I. 2012년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1. 기 준 일 : 2012. 6. 1
2. 대 상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170-8번 외7호
3. 결정·공시사항 : 개별주택 지번, 개별주택가격 등
4. 가격열람 등 : 결정가격에 대한 세부사항은 연수구 세무과 또는 인터넷(<http://etax.incheon.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주택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게 됩니다.

II.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1. 신청기간 : 2012. 9. 28 ~ 10. 29
2. 신 청 인 :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3.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연수구 세무과에 제출
 - 인터넷접수 : <http://etax.incheon.go.kr>에서 작성 제출
4. 결과통지 : 신청기간 만료일부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개별 통지

※ 문의처 : 연수구청 세무과 주택평가팀 (☎810-7976~7)

(별지 제10호)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접수 번호	접수 일	처리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	------	------------------------------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번호	휴대전화번호	
	소유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대 상 주 택	소재지 및 지번			
	지목		대지면적(㎡)	
	용도지역		건물연면적(㎡)	
	사용승인연도		층수	
	주건물구조			

이 의 신 청 내 용	공시가격	원 의	의견가격	원
	신청이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20 년 월 일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연수구청장 귀하

첨부 서류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수 수 료
		없 음